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914
----------	-------

발의연월일 : 2026. 2. 20.

발 의 자 : 이해민 · 김우영 · 김선민
차규근 · 손명수 · 이학영
김준형 · 서왕진 · 최혁진
조인철 · 신장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2월 시행된 현행법은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5가지 행위 유형 등 소위 다크패턴이라 불리는 6개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함.

이른바 다크패턴이란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행위를 유도하도록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말하는데, 현행 규정은 다크패턴의 6개 유형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어 추후 기술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다크패턴 유형의 발생 시 유연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열거된 다크패턴 금지 유형의 일부 추상적 문구 등에 따라 통신판매업자 등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통신판매업자 등이 운영하는 다양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환경에 적용하기에 불확실성 등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다크패턴의 유형을 부당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 포괄적인 방향으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인 적용 등을 돕기 위한 사례 중심의 해설서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크패턴 규율 사항을 정교화하고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침”을 “지침(제1항의 적용 여부에 대한 사업자의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사례 중심의 해설서나 체크리스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6. 그 밖에 부당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하거나 방해하는 등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5. (생략) <u><신설></u>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예방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을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① ----- -----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그 밖에 부당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하거나 방해하는 등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u> ② ----- ----- ----- ----- -----지침(제1항의 적용 여부에 대한 사업자의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정할 수 있다.

사례 중심의 해설서나 체크리스트를 포함한다)-----.